

현안분석 2012-16

다문화사회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법제 개선연구

김정순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현안분석 2012-16

다문화사회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법제 개선 연구

김 정 순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다문화사회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법제 개선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Art and Culture
Law for the Promotion of Cultural Diversity in
Korea's Multicultural Society

연구자 : 김정순(선임연구위원)
Kim, Jeong-Soon

2012. 12. 31.

요 약 문

I. 배경 및 목적

- 국내 외국인 이주민 140만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 다문화 법제는 다문화 가족과 결혼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한 한국사회의 정착 및 복지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음.
- 다문화사회의 도래에 따라 사회통합을 위한 여러 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언어, 문화, 예술, 체육, 방송, 언론 등 다문화사회의 문화예술 정책의 직접적 근거가 되는 법적 근거가 미흡함.
- 또한 국회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이 비준 발효(2010.2.25.)되어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국내법 정비가 필요함.
- 이에 본 보고서는 우리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진전하고 있는 현실을 전제로 사회구성원의 문화다양성 증진과 국제 문화교류를 통하여 사회통합과 정체성 확립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기초를 확립하기 위한 법제개선방안의 제시를 목적으로 함

II. 주요 내용

- 다문화와 문화다양성 논의
 - 다문화 사회의 현황은 인권이나 노동의 의제를 넘어서 문화의 제로 전환되고 있음.

- 다문화사회의 문화다양성의 증진 필요.

□ 유네스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2005.10.20, 파리, 제33차 총회에서 채택

○ 문화상품화, 문화자본주의에 대한 대응하여 문화다양성 논의 전개

○ 문화다양성의 의미

- 사회집단이나 사회가 표현하고자 하는 다양한 문화적 표현 방식

- 인류 공동으로 존중하고 보호되어야하는 보편적 가치의 대상

○ 지역 및 국가, 국제사회는 개인과 사회집단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증진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 강구

□ 우리나라의 다문화 및 문화다양성 관련 법제 현황

○ 다문화관련 법제 현황 분석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 ① 합법적 체류자 대상, ② 한국어교육과 한국문화교육에 치중

▷ 다문화교육의 한계

- 「다문화가족지원법」

▷ 정책대상이 문화가 아니라 가족에 중점이 있음.

▷ 복지적, 시혜적 관점 중심으로 문화적 관점의 결여

○ 문화예술관련 법제 현황 분석

- 현재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은 문화적 다양성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다문화사회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관련법제 개선방안

- 「다문화 사회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법률」 제정 방안
- 「문화예술진흥법」 등 기존 개별법의 개정 방안

Ⅲ. 기대효과

- 다문화사회의 현실을 반영한 문화다양성 증진을 실현하기 위한 법제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법제 제·개정시 참고 자료로 활용

▶ 주제어 : 다문화가족지원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문화다양성 협약, 문화다양성, 다문화사회

Abstract

I . Background and Purposes

- Korea has approximately fourteen hundred thousand immigrants and Korean multicultural laws mainly focus on the immigrants' settlement in the south Korean society and the provision of welfare to the multicultural families and married immigrants.
- Even though many Acts have been promulgated for the purpose of social integration and harmony in the advent of the era of a multicultural society, legal basis for public policy regarding arts and culture, including languages, culture, arts, sports, broadcasting and the press in the multicultural society are not yet fully developed.
- As of February 25, 2010 the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was ratified by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improvement of laws at the national level i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 Based on the current condition in which Korea has changed from a homogenous society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this

study aims to make suggestions for the improvement of the relevant law system to lay the legislative foundation so that the members of society can facilitate social integration and establishment of their identity through the promotion of cultural diversity and exchange of international culture.

II. Major Contents

- Discussion on multiculturalism and cultural diversity
 - Human rights or labor agenda for Korea's multicultural society have been being converted into cultural agenda
 - The promotion of cultural diversity in Korea's multicultural society is necessary.

- The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was adopted by the UNESCO General Conference on 20 October 2005 during the 33rd session of the UNESCO General Conference held in Paris, France.

- Issues of cultural diversity have developed in response to the commodification of culture and cultural capitalism

- Cultural diversity refers to
 - The manifold ways in which the cultures of groups and societies find expression


- One of the universal values that should be cherished and preserved by human beings
- Each region, nation and international society takes appropriate measures to respect, protect, and promote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made by individuals and social groups
- Current status of multicultural and cultural diversity laws in Korea
 - Analysis of multicultural laws
 - Framework Act on Treatment of Foreigners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 ▷ ① is for foreigners who are lawfully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② is focusing on the education of Korean and Korean culture
 - ▷ Limitations of multicultural education
 -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 ▷ The subject matters of public policy are emphasized on supporting multicultural families rather than promoting multiculturalism
 - ▷ Also, those subject matters are focused on rendering aid and welfare to multicultural families and the lack of cultural views in them has been noticed.
 - Analysis of current art and cultural laws
 - The concept of cultural diversity has not been included in the Culture and Arts Promotion Act, the Framework Act on the

Promotion of Cultural Industries, and the Culture and Arts Education Support Act

- Improvement suggestions for the relevant laws to promote cultural diversity in Korea's multicultural society
- Suggestion of the establishment of an Act on the promotion of cultural diversity in a multicultural society
- Suggestion of amendments to the existing Acts, including Culture and Arts Promotion Act

III. Expected Results

- Those suggestions of the improvement of the relevant law system to promote cultural diversity have been made based on the current status of Korea's multicultural society, and thus they will be practically used as reference materials for the establishment of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or amendments to the existing ones

 **Key words:**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Framework Act on Treatment of Foreigners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Culture and Arts Promotion Act, Culture and Arts Education Support Act,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cultural diversity, multicultural society

목 차

요 약 문	3
Abstract	7
제 1 장 서 론	15
제 1 절 연구의 목적	15
제 2 절 연구의 범위	16
제 2 장 다문화 및 문화예술관련 법제 현황	19
제 1 절 서 설	19
제 2 절 다문화 관련 법제의 전개	20
1. 다문화 입법의 변화	20
2. 관련 국제 협약	21
3. 다문화 관련 법제의 현황	23
제 3 절 문화예술법제의 현황	28
1. 문화예술진흥법	28
2. 문화산업진흥기본법	29
3. 문화예술교육지원법	29
4. 소 결	30
제 3 장 문화다양성 협약	31
제 1 절 협약의 채택 배경	31

1. 문화다양성 선언	31
2. 문화다양성 협약의 체결	33
3. 우리나라의 경우	34
제 2 절 문화다양성 협약의 주요 내용	34
제 3 절 법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점	38
1. 우리나라에서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제고	38
2.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문화 향유 기회 부여	38
3. 한국어 교육 이외의 언어정책 확대	39
4. 해외동포에 대한 문화보급 노력	39
5.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국제적 협력	39
제 4 장 다문화사회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법제 개선 방안	41
제 1 절 서 설	41
제 2 절 「다문화사회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법률」 제정방식	43
1. 목 적	43
2. ‘문화다양성’ 등의 정의 (제2조)	43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조)	44
4. 사회구성원의 권리와 책무(제4조)	45
5.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46
6. 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제6조)	47
7. 문화다양성증진위원회(제7조)	49
8.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및 연차보고(제8조)	52
9. 국가보고서의 작성(제9조)	54
10.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제10조)	55

11. 문화 간 상호교류 지원(제11조)	56
12. 문화다양성 증진 교육(제12조)	57
13. 문화다양성 전문 인력양성(제13조)	59
제 3 절 기존법률의 개정방식	61
1. 문화예술진흥법의 개정	61
2.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의 개정	71
3.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의 개정	72
참 고 문 헌	75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2011년 말 현재 체류이주민 137만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 다문화관련 법제는 다문화 가족과 결혼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한 한국사회의 정착 및 복지에 관한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이주민의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우리나라 국민의 주류 문화와 이주 문화가 상호 소통할 수 있는 문화다양성을 지향함으로써 사회적 통합과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는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사회적 통합과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는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다문화사회의 도래에 따라 사회통합을 위한 여러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언어, 문화, 예술, 체육, 방송, 언론 등 다문화사회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다.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이나 다문화가족 지원법이 다문화사회 도래에 대응한 법률들이기는 하지만, 다문화사회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로 삼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러한 법령들은 복지적, 시혜적 차원에서 제정되어 있는 바, 정책 대상들을 선별하게 하고 우리 국민의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데 대안이 되기 어렵다. 따라서 다문화사회에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령들의 한계를 분석하고 문화적 관점에서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10년 2월 25일 국회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이하 “문화다양성협약”이라 한다)이 비준 발효되었음에도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법적 정비가 없다. 문화다양성을 증진함으로써 다문화정책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령 정비 필요하다. 동 협약에서는 우리가 유네스코에 이행해야 할 조치, 국내에서 입법을 통

해 동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조치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 바 이에 관한 법적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어디에도 문화적 다양성에 관한 내용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다양한 문화의 국제교류와 문화다양성 존중 차원에서 문화예술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본 보고서는 우리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진전하고 있는 현실을 전제로 사회구성원의 문화다양성 증진과 국제 문화교류를 통하여 사회통합과 정체성 확립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적 기초를 확립하기 위한 법제개선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1) 문화다양성협약의 추진배경, 주요 내용 그리고 우리법에의 시사점을 검토하다.

2) 현행 다문화 및 문화예술관련 법률을 검토한다.

다문화관련 법률은 가족과 외국인을 정책 대상으로 하여 복지에 중점을 두는 한계를 갖고 있다. 최근 2010년 2월 25일 국회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이 비준, 발효되었음에도 현재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는 문화적 다양성에 관한 내용은 반영되어 있지 않다.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법적 준비가 없다는 점을 계기로 문화다양성을 증진함으로써 다문화정책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령 준비가 필요하다.

3) 다문화사회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법제의 정비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다문화사회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법률」(안)과 , 기존 문화예술관련 법률의 개정방안을 제시한다.

- 4) 다만, 문화다양성 협약의 이행을 위해서, 예컨대 문화상품의 교역으로 인한 문화획일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문화산업, 영상, 비디오, 음반 등의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더 유효적일 수 있다. 그러나 본 보고서는 문화다양성 전반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정책에 관해 한정하여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화 방송 등의 문화상품의 경우는 논의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제 2 장 다문화 및 문화예술관련 법제 현황

제 1 절 서 설

국내에 체류 중인 전체 외국인 수는 2001년 56만명에서 2007년 100만명을 돌파하였다. 2007년 8월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 4913만명의 2%에 해당하는 100만254명이 외국인이었다. 대체로 이 시기부터 우리 사회가 급속히 다인종·다민족 사회로 전환 중인 것으로 보기 시작하였다. 체류외국인은 2001년 이후 2005년과 2009년을 제외한 매년 10%내외 증가하였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2월말 기준 체류외국인은 1,395,5077명으로 2010년 12월 1,261,415명 보다 10% 이상 증가하였다. 이 외에도 법무부는 불법체류자를 약 27만 7천명 정도(2011.12 기준)로 보고 있다.

<표 1> 연도별 체류외국인 현황

(단위: 명)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체류외국인	1,066,273	1,158,866	1,168,477	1,261,415	1,395,077
- 장기체류	800,262	895,464	920,887	1,002,742	1,117,481
- 단기체류	266,011	263,402	247,590	258,673	135,020
불법체류자	223,464	200,489	177,955	168,515	277,596

출처 :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다문화사회의 도래에 따라 구체적 사회문제로서 이주민의 낮은 경제적 지위와 사회보장제도의 미비, 인권 보장 미흡과 강제출국으로 인

한 문제, 그리고 국적취득 문제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현상들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분석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다문화사회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이해가 부족한 점에서 야기되는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문화적 상호소통을 전제로 하지 않고 이주민을 단순히 정책 대상으로만 파악하는 관점에서 비롯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문화사회에 있어서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하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다문화 관련 법제의 전개

1. 다문화 입법의 변화

다문화사회 도래 이후 다문화 관련 입법정책이 상당히 발전하는 과정에 있다. 대표적으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42호로 제정되었고, 곧이어 「다문화가족지원법」이 2008년 3월 21일 법률 제8937호로 제정되었다. 그 밖에 각종 사회복지 정책과 관련된 입법에 있어 외국인을 정책 대상에 포함시키기 시작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법(제4조)은 법 적용 범위를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영역에 있는 외국인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내거주 외국인을 국가가 보호해야 하며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였다.

<표 2> 다문화 관련 입법

관계 법률	특 징
- 국적법 제10조 제11조 등 - 출입국관리법	전통적 입장 외국인으로 처우

관계 법률	특 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경제의 세계화 노동상품 인권 문제 대두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 다문화가족지원법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외국인의 정주화 이주여성 급증에 따름 일반법 성격
-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자녀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지침	이주민에 대한 복지, 교육 등 개별 정책 확대 성격
- 이주아동권리보호법(안) - 차별금지법(안) - 외국인 처우 조례 다수 제정 -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순창군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자녀 학습활동비지원 조례 외 다수	

2. 관련 국제 협약

이주민과 관련된 국제협약은 다수 체결되어 있다.

-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1990년 기준)
-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1990년 기준)
-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1991년 기준)
- 모든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1984년 기준)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92년 기준)

-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문화다양성 협약’) 세계인권선언 제27조는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15조는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소수자의 문화적 권리를 가장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27조이다. 그 내용을 보면 “종족적·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민족이 존재하는 국가에 있어서는 그러한 소수민족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그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그들 자신의 문화를 향유하고, 그들 자신의 종교를 표명하고 실행하거나 또는 그들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UN은 이런 1992년에 민족·종족·종교·언어적 소수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권리에 관한 유엔권리선언을 하였다. 이 권리선언의 제4조는 “소수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자신의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여 소수자의 문화적 권리에 대해서 단순한 국가적 부인만이 아니라 권리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의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있다.

이런 국제법적인 요청은 우리 헌법을 통해서 일반적인 승인성을 인정받는다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보편적인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그 기본권적 가치를 부여받을 수도 있을 것이며, 평등권의 차원에서의 차별금지도 다문화정책의 헌법적 근거가 된다.

이런 소수집단의 문화적 권리로서 다문화주의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때의 문화적 권리란 자신의 고유한 문화적 표현이나 접근, 그리고 물리적 차별로 희생될 수 있는 문화적 소수의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해 예외적인 규정이나 역차별을 통해 지원하는 것, 공적영역에서 문화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언어, 의상, 소품 등의 사용을 허용하고 지원하는 것, 지방이나 국가차원에서의 특별한 대표의 권리나 자치를

인정받는 것 등의 다양한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¹⁾

3. 다문화 관련 법제의 현황

(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1) 입법배경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정 2007. 5. 17 법률 제8442호)은 “재한 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2) 주요 내용

이 법률에는 재한외국인과 결혼이민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및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규정하고 있다. 재한외국인 등의 처우와 관련하여서는 재한외국인 등의 인권옹호 노력, 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영주권자의 처우, 난민의 처우, 귀화자의 처우, 전문외국인력의 처우 개선, 과거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 등의 처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0조-제17조). 이러한 각종 외국인 유형에 따른 처우에 관한 규정은 기본법의 특성상 대강의 방향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에 관해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어교육, 대한민국의 제도·문화에 대한 교육,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

1) 김남국, “심의다문화주의: 문화적 권리와 문화적 생존”, 『한국정치학회보』 제39집 1호 (2005 봄), 한국정치학회, 91면.

등을 통하여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2조).²⁾

3) 소 결

동법은 이주민의 급증에 따라 재한 외국인에 관한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제정되기는 하였으나, 외국인에 대한 기본적 인권 보호 내용이 결여되었다는 점, 기본법의 성격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정책의 방향과 지침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 재한 외국인의 개념이 합법적 체류자만을 대상으로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주여성은 제외하고 있다는 점, 한국어교육과 한국문화교육에 치중하여 동화주의에 가깝다는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무엇보다 입법 목적 가운데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과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에 치중한 나머지, “사회통합”의 관점은 약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는 동법이 문화적 다양성 또는 다문화적인 관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2) 다문화가족지원법

1) 입법배경

지난 17대 국회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혼혈인가족 지원에 관한 법률안」(2006. 11. 17, 김충환 의원 등 23인), 「이주민가족의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2007. 3. 8, 고경화의원 등 24인), 「다문화가족지원법안」(2007. 5. 2, 장향숙 의원 등 20인)이 제안되었다. 이 가운데 고경하 의원안과 장향숙 의원안이 통합되어 2008년 2월 19일 당시 여성가족위원회 대안으로 제안되어 「다문화가족지원법」으로 제정되었다(제정 2008. 3. 21. 법률 제8937호 시행일 2008. 9. 22.). 이러한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최윤철, “우리나라의 외국인법제에 관한 소고”, 『입법정책』제1권 제2호, 한국입법정책학회, 2007. 6.을 참조할 것.

경과를 거쳐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동법 제1조).

2) 주요 내용

다문화가족 지원법에서는 정책의 대상이 되는 다문화가족의 범위(제2조)와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의 책무 규정(제3조)을 규정하였다.

주요 정책에 있어서는 다음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5조).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제6조).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7조).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을 방지·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 확대·가정폭력으로 인한 혼인관계 종료시 각종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8조). 그 밖에 ⑤ 산전·산후 건강관리 지원(제9조), ⑥ 아동 보육·교육(제10조), ⑦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제12조), ⑧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제13조), ⑨ 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제14조), ⑩ 권한의 위임과 위탁(제15조), ⑪ 민간단체(제16조) 등의 지원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다.

이 법률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체계상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보다는 집행법의 성격을 갖는다. 법률의 적용 및 지원 대상과 소관 부처는 다르지만,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은 기본법적 성격이 강하고, 이와 달리 다문화가족 지원법은 집행법의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이유로 법안에 규정되어 있었던 기본계획 및 위원회 관련 규정들은 심의 과정에서 삭제되었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의 기본 개념 및 정책 대상도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동일하게 반영되었다. 둘째, 법 내용에 있어 지원법의 성격을 갖는다. 정책 대상에 대한 일정한 적극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3) 2011년 개정 내용

2011년 4월 4일 개정에 있어서는 우선 다문화가족 지원 체계에 대한 다음과 같은 개정이 이루어졌다. 즉,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제3조의2),³⁾ ② 여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제3조의3), ③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제3조의4).⁴⁾ 그 외에 다문화가족의 범위 확대,⁵⁾ 아동교육 실태조사 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 실시, 학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 실시, 결혼 이민자 등에 한국어교육 지원, 가정폭력 등의 예방 및 피해 지원, 의료

3) 기본계획에는 ①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②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분야별 발전시책과 평가에 관한 사항, ③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④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규정은 국무총리 훈령으로 이미 2009년 9월 17일 제정되어 있었다.

5) 다문화가족의 범위는 그동안 출생시부터 한국인인 자와 외국인 또는 귀화자로 이뤄진 가족들에 한정되어 왔으나, 2011년 개정으로 귀화자와 외국인으로 이뤄진 가족, 귀화자와 귀화자로 이뤄진 가족들까지 다문화가족으로 인정하고 지원하게 된다.

서비스 지원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문화가족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의 수립,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설치 등 종래 다문화정책의 부처 간 중복, 혼선 등 비효율을 극복할 필요성에서 마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개정 내용들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 정책의 법적 근거로는 미흡하다는 한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4) 2012년 개정 내용

2012년 2월 1일 개정(법률 제11284호, 2012. 8. 2. 시행)에 있어서는, ① 지방자치단체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도록 하였고(제3조제2항 신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도록 하였고(제12조 개정), ③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두는 전문인력의 자질과 능력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며(제12조의2 신설), ④ 다문화가족지원 및 다문화 이해교육 등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제13조의2 신설), 그리고 ⑤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인 결혼이민자의 외국인등록 정보 및 귀화허가 신청정보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하였다(안 제15조의2 신설).

5) 소 결

동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기본적인 내용

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가족 중 결혼이민자만에 중점이 두어지고, 외국인 근로자와 북한이탈주민 등 다양한 이주형태를 규정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⁶⁾ 다문화가족 지원 내용이 주로 다문화‘가족’의 교육과 복지에 맞추어 지고 있다는 점 등이 우리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에 관한 관점을 제시하고 못함으로써 다문화 사회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법제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제 3 절 문화예술법제의 현황

1. 문화예술진흥법

이 법은 1972년 8월 14일에 제정(법률 제2337호)되었고, 현재 총6장(제1장 총칙, 제2장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제3장 문화예술복지의 증진, 제4장 문화예술진흥기금,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제6장 보칙) 41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2장에서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전문인력 양성,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 등을 규정하고, 제3장에서 문화예술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학교 등의 문화예술 진흥, 문화산업의 육성·지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를 규정하고, 제4장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설치를, 제5장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법의 목적처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문화예술의 다양성을 증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6) 북한이탈주민에 관해서는 별도의 법률(「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2.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이 법은 1999년 2월 8일에 제정(법률 제5927호)되었고, 총7장(제1장 총칙, 제2장 창업·제작·유통, 제3장 문화산업 기반조성, 제4장 삭제, 제5장 삭제, 제6장 문화산업전문회사, 제7장 보칙) 59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의 목적은 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이 법은 제1장에서 문화산업의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제2장에서 창업·제작·유통을 지원 및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규정하며, 제3장에서는 문화산업 기반조성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 기술 및 문화콘텐츠 개발의 촉진,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세제지원,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설립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법 또한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3.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이 법은 2005년 12월 29일에 제정(법률 제7774호) 되었고, 총5장(제1장 총칙,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등, 제3장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 제4장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제5장 문화예술교육사) 34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은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설립하며, 제3장에서 학교문화예술의 지원을 위한 교원의 연수기회 제공, 학교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의 지원, 지역사회와의 지원체제 구축 등을 규정하고, 제4장에서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교육시설 등 경영자의 임무, 민간 교육

시설 등의 지원, 지역 사회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의 지원, 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등을 규정하며, 문화예술교육사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도 학교와 사회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규정하고 있지만, 다문화사회의 문화다양성의 증진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4. 소 결

문화예술관련법제가 다문화사회에 있어서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어떠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문화예술관련 법제는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규정이 미비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다문화사회의 문화다양성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관련법제의 개정을 통하여 구현할 필요가 있다.

제 3 장 문화다양성 협약

제 1 절 협약의 채택 배경

1. 문화다양성 선언

유네스코는 2001년 10월 15일부터 11월 3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31차 총회에서 「문화다양성선언」(UNESCO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을 채택하였다. 이 선언문은 서문과 총 12개 항으로 구성된 본문과 각 회원국이 선언문을 배포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명시한 실행계획을 선언문에 첨부하고 있다. 이 선언은 164개 회원국들이 미국 주도의 세계화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각 나라, 각 지역의 문화적 고유성과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 선언의 서문에서는 유네스코는 문화다양성의 인식과 인류화합에 대한 자각 및 문화간 교류 발전을 기반으로 한 연대를 지향하고, 새로운 정보 통신 기술의 대화를 위한 조건을 형성한다는 것을 고려하며, 문화의 풍부한 다양성의 진흥과 보존을 위해 유네스코에 특별히 부여된 특별한 임무를 인식하여 문화다양성 선언을 채택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이 선언문에서는 문화의 개념과 관련하여 “문화는 사회와 사회구성원들의 특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징의 총체로 간주되어야 하며 문화는 예술 및 문학 뿐 아니라 생활양식, 함께 사는 방식, 가치체계, 전통과 신념을 포함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있다. 한편 “상호신뢰와 이해의 여건 속에서 문화의 다양성, 관용, 대화 및 협력을 존중하는 것이 국제평화와 안전을 가장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문화의 풍성한 다양성을 진흥하고 보존하기 위해 유엔체제 안에서 유네스코에 부여된 특별한 임무”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1) 문화다원주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 2 조 (문화다양성에서 문화다원주의로) 점점 다양해지는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함께 사는 것에 대한 의지와 더불어 다원적이고, 다양하며, 역동적인 문화정체성을 지닌 사람 및 집단간의 조화로운 상호작용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모든 국민을 포용하고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은 사회적 결속, 시민사회의 역동성과 평화를 보장한다. 그러므로 문화다원주의는 문화 다양성을 정책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민주 체제로부터 분리할 수 없는 문화다원주의는 문화교류와 공공의 삶을 유지하는 창조적인 역량을 풍성하게 하는 데 이바지한다.

2) 특히 문화다양성을 전제로 한 인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

제 4 조 (문화다양성을 위한 조건으로서의 인권) 문화다양성의 보호는 인간존엄성의 존중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는 윤리적 책임이다.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은 특히 소수민족이나 토착민들의 권리를 의미한다. 누구도 국제법으로 보장하는 인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데 문화다양성을 이용할 수 없다.

3) 제7조에서는 인류의 공동유산인 문화다양성은 현재와 미래 세대의 구성원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상호작용하기 위한 필요수단임을 천명하고 있다.

4) 문화상품과 서비스가 단순한 상품이나 소비재로 다루어지지 않아야 하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문화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또 문화다양성의 진흥이야말로 이러한 시점에 반드시 필요하고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제8조 참조).

제 8 조 (문화상품과 서비스의 특수성) 오늘날 창조와 혁신의 거대한 가능성을 연 경제와 기술의 변화 시기를 맞이하여, 창조작품 공급의 다양성, 작가와 예술가의 권리에 대한 적절한 인식, 정체성, 가치, 의미의 척도로서 단순한 상품이나 소비재로 취급되어서는 안 되는 문화상품과 서비스의 특수성에 대한 특별한 인식이 필요하다.

5) 공공 및 민간기관과 시민사회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제11조 (공공부문, 민간부문, 시민사회간의 협력 강화) 시장의 힘만으로는 인간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인 문화다양성의 보전과 증진을 보장할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민간부문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공공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6) 이러한 내용의 문화다양성 선언은 비록 기존의 국제통상협상의 가치와 갈등관계를 갖고 있지만 문화에서의 각국의 특수성을 보장하고 문화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유네스코는 ‘문화다양성선언’을 기초로 ‘문화다양성 협약’ 체결을 진행하게 된다.

2. 문화다양성 협약의 체결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문화에 대한 특수성을 인정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다. WTO 출범 이후 세계문화부장관회의(INCP)와 문화다양성연대(CCD)·문화다양성국제연대(INCD) 같은 NGO가 결성되었고,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이 채택되었다.

그 후 수차례의 전문가회의와 정부간 회의를 통해 2005년 6월 3일 최종적으로 문화다양성 협약 초안이 마련되었다. 최종안은 같은 해 10월 열리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제33차 총회에서 148개국의 지지를 받으며 채택되었다. 이 협약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전체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30개국 이상이 비준이 필요한데, 2007년 3월 18일 30개국 이상 회원국들의 국내비준으로 정식 발효되었다.

3.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는 협약체결 당사국임에도 불구하고 비준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2007년 10월 다른 조약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핵심 조항(제20조, 25조)을 유보한 채 비준을 추진하려 했으나, 2010년 2월 25일 국회에서 유보 없이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제 2 절 문화다양성 협약의 주요 내용

문화다양성협약(문화콘텐츠와 예술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를 위한 협약, Protec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Contents) 초안은 총 6장 34조와 4개의 부속서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rticle 4 (정의) 본 협약의 목적상, 용어는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1. 문화다양성

‘문화다양성’은 어떠한 집단이나 사회의 문화를 표현하는 다양한 방식을 일컫는다. 이러한 표현방식은 집단 및 사회의 내부와 집단 및 사회 상호간에 전달된다.

문화다양성은 인류의 문화적 유산을 표현하고 증대하고 전수하는 갖가지 방식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용되는 수단이나 기술이 무엇이건 관계없이 예술을 창조하고

생산하고 유포하고 보급하고 향유하는 여러 양식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이하 생략)

6. 문화정책과 조치

‘문화정책과 조치’란 각 지방이나 국가, 지역, 또는 국제적 차원의 문화 관련 정책과 조치를 일컫는다. 이러한 정책은 문화 자체에 초점을 둘 수도 있고, 문화 활동, 상품,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나 이들의 창조, 생산, 보급, 배포 등을 포함함으로써 개인, 집단 및 사회의 문화적 표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수립될 수도 있다.

(이하 생략)

8. 상호문화성

‘상호문화성’이란 여러 문화가 존재하여 공평한 사회작용을 하는 상태를 뜻하며, 아울러 대화와 상호 존중을 통해 문화적 표현 공유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을 일컫는다.

Article 6 (국가적 차원의 당사국 권리)

1. 각 당사국은 제4조 제6항에서 정의된 문화정책과 조치의 틀 내에서 자국의 특수한 상황과 필요성을 고려해, 그 영토 내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2. 그러한 조치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a)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규제 조치
 - (b) 문화 활동, 상품 및 서비스에 이용되는 언어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여, 당사국 영토 내의 모든 문화 활동, 상품

- 및 서비스 가운데 자국의 것이 창조, 생산, 보급, 유통, 함유될 수 있는 기회를 적절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조치
- (c) 비공식 부문의 독립적 문화 산업과 활동이 문화 활동,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 보급, 유통 수단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마련한 수단
 - (d) 공공 재정 지원을 위한 조치
 - (e) 비영리 조직, 공공, 민간 기관, 예술가 및 기타 문화전문가들이 생각, 문화적 표현, 문화 활동, 상품 및 서비스를 자유롭게 교환하고 유통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들의 활동에 창조적 정신과 기업가적 정신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장려하는 조치
 - (f) 적절하게 공공 기관을 설립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치
 - (g) 예술가 및 문화적 표현의 창조에 관여하는 사람들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치
 - (h) 공영 방송 이용을 포함하여 미디어의 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치

Article 7 (문화적 표현 증진을 위한 조치)

1. 당사국은 개인과 사회 집단이 다음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자국 영토 내에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 (a) 소수자 및 토착민을 포함해 다양한 사회 집단뿐만 아니라 여성의 특별한 상황이나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문화적 표현을 창조, 생산, 보급, 유통하고 이용함.
 - (b) 자국 영토 내 및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에 접근함

2. 당사국은 예술가 및 그 외의 창조 과정에 관계된 사람, 문화적 공동체와 그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들의 중요한 기여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도모를 위한 그들의 중심 역할을 인식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Article 10 (교육과 인식) 당사국은

- (a) 특히, 교육 프로그램 및 인식 제고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장려하고 증진해야 한다.
- (b)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해 타 당사국 및 국제, 지역 기구와 협력해야 한다.
- (c) 문화 산업 분야에서 교육, 훈련 및 교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창조 정신을 고취시키고 생산력을 증강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전통적 생산 방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식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Article 10 (시민사회의 참여) 당사국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민 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당사국의 노력에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Article 13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문화의 통합) 당사국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차원에서 문화를 자국의 발전 정책에 통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이러한 틀 안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련된 측면을 장려한다.

제 3 절 법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점

문화다양성협약은 문화상품 또는 문화서비스에 있어서 기존의 통상규범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이념이 있는 것으로 각국이 자국의 문화의 특수성과 고유성을 인정하는 조치를 정당화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다양성 협약의 체약당사국으로서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국내법적 이행을 위하여 문화다양성 협약이 우리나라 관련법제 개선에 있어서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에서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제고

국민들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제고가 우선되어야 한다. 다문화사회에 대비하여 문화다양성을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다문화교육은 다문화‘가족’ 교육에 치중되어 있다. 이들에 대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보급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다문화교육은 우리 국민 일반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다문화‘가족’ 교육과 다문화‘이해’ 교육은 구분되어 이해되어야 한다.

2.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문화 향유 기회 부여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이주민이 문화향유권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의 다문화정책은 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매우 취약하다. 예를 들어 사회통합교육이나 문화교육에 있어 주로 시행되는 음식강좌, 전통문화체험, 예절교육 등은 일

부 실용적 효과가 없지 않으나, 문화적 다양성에는 한계가 있다.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문화 향유의 기회 부여 역시 문화다양성 협약의 취지에 입각할 필요가 있다.

3. 한국어 교육 이외의 언어정책 확대

문화다원주의의 실현의 다른 한 면이 바로 소수자의 고유의 언어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이중언어 정책을 넘어서 사회 전반에 다양한 언어로 정보가 제공되는 법제 시스템이 필요하다.

4. 해외동포에 대한 문화보급 노력

외국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의 문화정체성 유지 차원의 문화와 언어 학습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의 문화적 정체성의 요소는 세계적 차원에서 문화적 다양성의 존중이 되기 때문이다.

5.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국제적 협력

협약이 강조하는 바에 따라 개도국과 협력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우리나라 다문화 정책의 주요 대상도 역시 아시아의 개도국과 관련이 깊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국제적 협력을 통해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시키도록 한다.

제 4 장 다문화사회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법제 개선 방안

제 1 절 서 설

우리나라가 문화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문화다양성을 존중하고 국가공동체 구성원이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 문화적 다양성의 보장은 세계화와 문화산업화에도 불구하고 문화의 다양성을 통해 각국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교류하고 이를 통해 문화의 창조를 가져오는 기회가 될 것이다.

문화다양성의 존중은 다문화사회에서도 필수적이다. 현재 다문화사회 도래에 따른 정책은 다문화가족 정책에 치중되어 있어서, 인구의 국제적 이동이 빈번한 시대를 맞이하여 국내에 들어오는 이주민이 보다 다양화 될 것을 예상한다면, 우리 사회의 통합을 위해서도 다문화사회정책은 문화적 다양성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문화다양성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국제협약이 요구하는 권리와 의무를 국내법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이주민 상황을 고려한 문화다양성을 증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사회의 문화 간 공존과 사회통합을 이를 필요가 있다.

다만, 문화다양성 협약의 이행을 위해서, 예컨대 문화상품의 교역으로 인한 문화획일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문화산업, 영상, 비디오, 음반 등의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더 유효적일 수 있다. 그러나 본 보고서는 문화다양성 전반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정책에 관해 한정하여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상품의 경우는 논의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법제 개선 사항>

- 국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화권 강화 방안
 - 장애인, 노인, 이주노동자 및 결혼이주여성 등 국내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화적 권리의 실현을 위한 문화정책 강화방안, 기존의 문화복지적 접근의 강화방안
- 우리문화의 문화적 표현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의 전통문화정책 방안
 - 세계속의 우리전통문화의 보전과 활용을 통한 정체성 확립과 문화다양성 증진
- 문화다양성에 부응하는 언어정책 방안
 -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사회통합 차원의 우리 언어 학습기회 제공
 - 외국거주 해외동포의 문화정체성 유지차원의 언어 학습기회 제공
- 문화다양성에 대한 교육강화방안
-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문화콘텐츠사업)을 시행하는 단체, 일반인, 언론매체 등에 대한 지원 강화 등
- 국제협력 강화방안
 - 개도국과의 협력강화
- 재원확보 방안

<법제 개선 형식>

- 독립 법률 제정방식과 기존 법률의 개정방식 검토
 - 「다문화 사회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법률」 제정 방안
 - 「문화예술진흥법」 등 기존 개별법의 개정 방안

제 2 절 「다문화사회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법률」 제정방식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 새로운 문화 창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문화사회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법률 시안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목 적

제 1 조 (목적) 이 법은 다문화사회에서 사회구성원이 문화다양성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상호존중하며 교류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을 기반으로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문화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 시안은 문화다양성을 기반으로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문화다양성’ 등의 정의 (제2조)

제 2 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다문화사회”란 국적·민족·인종 및 종교·언어 등 문화권이 서로 다른 다양한 구성원이 공존하는 사회를 말한다.
2. “문화다양성”이란 다문화사회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문화를 표현하는 다양한 방식을 말한다.
3. “문화다양성콘텐츠”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문화콘텐츠를 말한다.

법의 정의규정은 그 법령 중에 쓰이고 있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하는 규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의규정의 법리적 기능은 해당 법령의 특정한 조항을 해석하는 경우 해석지침으로 작용하는 점에 있다.

따라서 본 법률시안의 제명과 입법목적에 따라 본 조항에서는 “다문화화사회”, “문화다양성”, “문화다양성콘텐츠”에 관한 정의규정을 둔다.

※ 유사 입법례

- 일본 미야기현(宮城県) 「다문화공생사회의 형성추진 조례」

제 2 조 (정의) 이 조례에서 “다문화공생사회”란 국적, 민족 등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 문화적 배경 등의 차이를 인정하고 아울러 인권을 존중하며, 지역사회의 대등한 구성원으로서 함께 사는 사회를 말한다.

- 「문화다양성협약」

제 4 조 (정의) 본 협약의 목적상 용어는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1. 문화다양성

문화다양성은 어떠한 집단이나 사회의 문화를 표현하는 다양한 방식을 일컫는다. (이하 생략)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조)

제 3 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전반의 문화다양성을 증진시켜 새로운 문화 창조와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문화적 기반을 조성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구성원의 문화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문화적 기반조성을 위하여 문화다양성에 대한 조사·연구사업의 지원, 문화다양성을 표현하는 문화·예술의 활

성화, 문화다양성과 관련하여 외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구성원에 대하여 국적·민족·인종 및 언어 등 문화권의 차이를 원인으로 하여 문화적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내지 책임 또는 정책수립 등에 관한 규정은 그 법령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행하여야 할 책무 등에 관한 선언적 내용을 정함이 일반적이다.

이는 해당 법령이 구현하고자 하는 입법(행정)목적은 좀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함에 있다. 또한 본 법률은 제3항에서 일반적으로 규정되는 행정목적적 규정 내용에서 나아가 다문화사회하에서의 사회구성원에 대한 차별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 유사 입법례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 4 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4. 사회구성원의 권리와 책무(제4조)

제 4 조 (사회구성원의 권리와 책무) 모든 사회구성원은 자신이 갖는 문화다양성을 향유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가지며, 다른 구성원의 문화다양성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문은 다문화사회의 사회구성원 간 통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절차적 노력과 차별금지의 원칙 등의 적용과 아울러 사회구성원 상호 간 권리·의무관계를 규정하여 실질적 법률관계의 토대를 형성하려는 것이다.

※ 유사 입법례

▪ 「과학기술기본법」

제 4 조 (국가 등의 책무와 과학기술인의 윤리) ① 국가는 과학기술혁신과 이를 통한 경제·사회 발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과학기술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인은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이 법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 조 (의료인 등의 책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 및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6 조 (국민의 책무와 권리) ①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5.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제 5 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문화사회의 문화적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현대 행정사회의 국가정책 등은 입법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구현된다. 따라서 유사 관련 행정영역에 있어 관련 법령들 상호 간 규율대상 또는 사항 등이 중복되거나 상호 연관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이에 따라 법령에서 개별 규정 간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여 향후 발생할 우려가 있는 법령 간 상충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조문은 다문화사회의 문화적 지원에 관하여서는 이후 다른 법령의 제·개정 시 그 법령은 본 법률의 목적이나 이념 등에 부합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이는 다소 포괄적이기는 하나 다문화사회에 있어 문화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지원주체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자 하는 입법적 판단이라 할 수 있다.

※ 유사 입법례

- 「과학기술기본법」

제 3 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학기술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6. 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제6조)

제 6 조 (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회 전반의 문화다양성을 증진하고 국가가 가입한 유네스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이하 “문화다양성협약”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문화사회 문화다양성증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제7조에 따른 문화다양성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다양성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문화다양성 지원을 위한 다음 각목의 기본 정책
 - 가. 국민의 문화다양성 인식제고를 위한 조사·연구사업 및 정책
 - 나. 문화다양성에 입각한 문화콘텐츠 발굴 및 보급
 - 다. 문화다양성에 관한 정보자료 제작 및 보급
 - 라.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문화공간 조성
 - 마. 문화다양성 증진 교육 및 홍보
 - 바.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인력 양성
 - 사.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관련 국제교류 및 국제기구 협력
 3. 문화다양성 증진 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4. 그 밖에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교육·연구 기관 및 법인·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련 기관·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은 문화다양성 증진에 있어서의 문화적 지원에 관한 행정업무를 국가적 책무로 인식하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행정주체를 문화체육부장관으로 지정·운영함을 규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유네스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이하 “문화다양성협약”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문화사회 문화다양성증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동법시안

제7조에 따른 문화다양성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아울러 보다 원활한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과 관계 기관에 대한 협력요청 권한 및 국가기본계획의 세부적 실행을 위한 이행계획(세부시행계획)에 관한 내용을 함께 규정하여 절차적 신속화와 계획의 효율적 운영을 의도하고자 한다.

※ 유사 입법례

▪ 「건설산업기본법」

제 6 조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산업의 육성, 건설기술의 개발,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5년마다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산업진흥시책의 기본 방향
2. 건설기술의 개발 및 건설기술인력의 육성에 관한 대책
3. 건설산업의 국제화와 해외 진출의 지원
4. 건설공사에 관한 안전·환경보전 및 품질의 확보대책
5.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용역업의 육성대책
6. 건설공사의 생산성 향상 대책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시장의 동향, 건설기술의 개발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7. 문화다양성증진위원회(제7조)

제 7 조 (문화다양성증진위원회)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문화다양성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에 대한 이행 평가에 관한 사항
 3. 문화다양성증진정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및 연차보고에 관한 사항
 5. 문화다양성증진정책에 관한 관계 부처 간 협조 및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6. 문화다양성증진정책과 관련한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7.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정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문화다양성정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위원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한다.
- ④ 간사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처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한다.
- ⑤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 장관
 2.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3. 외교통상부 장관
 4. 법무부 장관
 5. 행정안전부 장관
 6.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7.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8. 보건복지부 장관
 9. 여성가족부 장관
 10. 국무총리실장
- ⑥ 위촉위원은 문화다양성증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職)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문화다양성 관련 단체의 장 또는 다문화 관련 단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 ⑦ 위원(당연직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⑨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원회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있어 관계 다수인의 참여와 표결 등을 통하여 의사를 합성함으로써 하나의 의사를 결정하는 조직형태를 의미한다. 위원회는 행정의 민주성 및 공정성의 확보, 전문지식인의 도입, 이해의 조정 또는 관계 기관 간 의사의 종합-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설치한다. 개별적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은 위원회가 행하는 행정작용 또는 소관 사무, 행정조직상 지위 또는 관련되는 행정기관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문화사회에 있어 문화다양성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업무는 당연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소관업무라 할 것이며, 위원회의 설치를 국무총리산하로 설정하여 다문화사회 관련 문화다양성 증진 및 지원의 행정업무에 관한 국가적 책임에 대한 관계행정기관의 공동인식 및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려는 것이다.

※ 유사 입법례

▪ 「건축기본법」

- 제13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①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고 관계 부처의 건축정책의 조정 및 그 밖에 이 법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국가건축정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건축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 자
- ④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⑤ 위원의 임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및 연차보고(제8조)

제 8 조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및 연차보고)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적 다양성을 이루는 다양한 문화적 요소, 문화다양성 증진과 관련된 사회구성원의 의식수준과 문화향유 및 창조활동의 실태를 조사(이하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의 조사항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문화다양성 증진 정책의 추진현황 및 세부이행 평가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리
2.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 실태 및 평가결과
3.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결과 및 분석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3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후적 절차에 관한 조항으로서,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이 예상되는 특정 행정영역에 대한 실

질적 조사업무의 수행을 규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에 따른 조사업무를 통하여 습득된 보고서 등은 향후 관련 업무의 수행 계획 및 운영 등에 대한 실질적 근거 자료로 활용하여 법제도와 실무적 현상 간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 유사 입법례

▪ 「산업발전법」

제15조 (실태조사)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발전시책등의 효율적인 수립·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산업 경쟁력
2. 산업의 기술개발 투자 및 기술 경쟁력
3. 기업의 설비 투자
4. 산업의 수요·공급
5. 산업인력의 수요·공급
6. 기업의 해외 투자
7. 산업의 공동화(空洞化)
8. 산업구조조정과 기업의 사업 전환
9. 그 밖에 대내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현안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국가보고서의 작성(제9조)

제 9 조 (국가보고서의 작성) ① 정부는 유네스코「문화다양성협약」 제9조에 따른 국가보고서를 작성하여 4년마다 유네스코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가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가보고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가보고서의 작성은 문화다양성협약 제9조에 따른 의무사항이다. 따라서 국가보고서 작성시 각관련 부처의 협조를 규정하려는 것이다..

※ 유사 입법례

▪ 「문화다양성 협약」

제 9 조 (정보공유와 투명성) 당사국은 자국 영토 안 그리고 국제적 차원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들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보고서 형태로 4년마다 유네스코에 제출해야 한다.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63조 (국가보고서의 작성) ① 정부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가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가보고서를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의 당사국총회에 제출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0.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제10조)

제10조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구성원의 문화적 다양성을 표현하는 문학, 예술, 체육, 영상, 축제, 문화행사, 문화상품, 체험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다양성콘텐츠의 발굴과 확산에 노력하는 연구기관, 예술단체, 예술종사자 및 일반인 및 문화다양성콘텐츠를 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의 문화다양성 콘텐츠를 활용하여 문화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문화공간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다양성을 표현하는 문화예술 활동과 그 결과물(이하 “문화다양성콘텐츠”라 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연구기관, 예술단체, 예술종사자 및 일반인 및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규정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문화다양성콘텐츠의 활용을 위한 문화공간의 조성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 유사 입법례

- 「문화다양성 협약」

제 6 조 (국가적 차원의 당사국 권리) ① 각 당사국은 제4조 6항에서 정한 문화정책과 조치의 틀 안에서 자국의 특수한 상황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영토 내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② 그 조치는 다음을 포함한다.

1.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규제 조치
2. 문화 활동, 상품 및 서비스에 사용되는 언어에 대한 조치를 포함하여, 당사국 영토 내의 모든 문화 활동, 서비스 및 상품 가운데 자국의 것이 창조, 생산, 보급, 배포 및 향유되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기회를 제공하는 조치
3. 비공식 부문에서 이루어지는 자국의 독립적 문화산업과 활동이 문화 활동,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 보급 및 배포 수단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4. 공공 재정지원을 위한 조치
5. 비영리 조직 및 공공, 민간 기관, 그리고 예술가와 문화전문가들이 생각, 문화적 표현, 문화 활동, 상품 및 서비스를 자유롭게 교환하고 유통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들의 활동에 창의적이고 기업가적 정신을 고무하도록 장려하는 조치
6. 공공 기관의 설립, 지원을 위한 적절한 조치
7. 예술가 및 그 밖의 문화적 표현의 창조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양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치
8. 공공 방송의 활용 등 미디어의 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치

11. 문화 간 상호교류 지원(제11조)

제11조 (문화 간 상호교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 정책과 관련한 국제기구에 참여하거나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정보교환 및 공동조사·연구 등의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문화 간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의 증진을 위하여 외국 또는 외국문화단체와의 문화 간 상호교류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적·민족·인종·지역·성별 등에 관계없이 문화다양성을 표현하는 문학, 예술, 체육, 영상, 축제, 문화행사, 문화상품 등을 통한 사회구성원 간의 문화적 교류를 지원할 수 있다.

문화다양성 정책과 관련한 국제기구 등에의 참여, 국제협력사업 추진 등을 통한 문화 간 국제교류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또한 외국 또는 외국문화단체와의 상호교류사업 등의 지원을 규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적, 민족, 인종 등의 차별없이 문화다양성을 표현하는 예술활동을 통한 사회구성원간 문화교류를 지원하려는 것이다.

※ 유사 입법례

▪ 「문화다양성 협약」

제12조 (국제협력의 증진)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 8조와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을 유념하면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증진에 필요한 여건 조성을 위하여 양자간, 지역적, 국제적 협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1. 당사국간 문화정책과 조치에 대한 대화 촉진
2. 전문적, 국제적인 문화교류와 모범사례 공유를 통한 문화분야 공공 기관의 공공 부문 전략 및 경영 능력의 강화
3.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강화 및 증진에 있어 시민단체, 비정부 기구, 민간부문 간의 파트너십 강화
4. 정보공유 및 문화적 이해를 드높이고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신기술의 활용 촉진 및 파트너십의 권장
5. 공동 제작 및 공동 배급에 관한 협정의 체결 장려

12. 문화다양성 증진 교육(제12조)

제12조 (문화다양성 증진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구성원이 문화다양성을 이해하고 활용하여 우리 문화의 재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학교를 포함한 교육기관 등을 활용하여 문화다양성 증진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 실시시기 및 교육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다문화와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이의 활용을 제고하는 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학교를 포함한 교육기관 등을 활용한 문화다양성 증진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 유사 입법례

▪ 「문화다양성 협약」

제10조 (교육과 공공 의식) ① 당사국은 교육프로그램, 인식제고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장려하고 증진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목적을 위하여 타 당사국 및 국제적, 지역적 기구와 협력해야 한다.

③ 문화산업 분야에서 교육, 훈련 및 교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창의성을 높이고 생산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생산의 전통적 방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14조 (학교의 장의 임무) 학교의 장은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국가의 시책을 고려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협조의 내용에 관하여는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등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학교의 장이 정할 수 있다.

제15조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공립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장비, 문화예술교육사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민간 교육시설의 경영자 및 교육단체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시설·장비, 문화예술교육사·프로그램 및 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3. 문화다양성 전문 인력양성(제13조)

제13조 (문화다양성 전문 인력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의 문화다양성을 증진하고 문화의 소통에 기여할 수 있는 언어·문화·예술·체육·관광 등의 전문인력을 양성·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문화적 다양성을 기반으로 문화를 보급하고 우수한 문화예술을 계승·발전·창조해 가기 위해서는 그 담당자로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결하다. 이에 따라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다문화사회의 문화적 다양성 증진을 배경으로 문화적 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새로운 문화창조를 선도할 수 있는 인력을 배출하는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 유사 입법례

▪ 「사회보장기본법」

제31조 (전문인력의 양성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 학술 조사 및 연구, 국제 교류의 증진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5조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기술의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양성기관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기술이전·사업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① 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 및 기술평가에 필요한 인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기술평가·기술경영 및 기술계약 등(이하 이 조에서 “기술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에 교육 설비의 확보, 교재 개발과 교육 시행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그 교육과정에 기술평가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지원과 제3항의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3 절 기존법률의 개정방식

문화다양성협약을 반영하고 다문화사회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관련법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고려대상이 되는 법률은 「문화예술진흥법」이다. 「문화예술진흥법」은 문화예술 정책의 기초를 닮는 기본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문화다양성을 증진하는 정책들은 기본법의 개정을 통하여 제도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 밖에 관련 법률로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의 개정도 문화다양성의 증진을 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문화예술진흥법의 개정

(1) 제 1 안

이 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조의 목적 조항에 문화다양성 증진이라는 목적을 추가함으로써 「문화예술진흥법」의 성격을 추가적으로 변화시키고, 이런 문화다양성 증진이라는 법률의 추가목적에 근거로 하여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정책수단을 관련 조문에 반영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조문을 중심으로 개정시안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 목적 조항의 개정

현 행	개정시안
제 1 조 (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	제 1 조 (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고 새로

현 행	개정시안
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u>은 문화를 창조하여 문화다양성 증진에</u>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항은 민족문화를 창달하는 것과 문화다양성을 증진하는 것이 대립되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문화적 다양성의 관점에서 보면 민족문화 내지는 전통문화는 세계적 관점의 패러다임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는 세계적 관점에서 문화다양성의 한 요소가 된다. 이에 따라 문화다양성을 증진하는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전통문화예술의 진흥과 함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수단이 채택되어야 한다. 또한 대중 문화예술에서도 세대간, 지역간, 계층간 문화적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다문화사회의 문화다양성 증진을 통한 새로운 문화의 창조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2) 시책과 권장 조항의 개정

현 행	개정시안
<p>제 3 조 (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 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p>	<p>제 3 조 (시책과 권장) ① (같음)</p> <p>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 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 <u>및 문화다양성의 증진에</u>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p>

이 안은 문화예술 진흥시책으로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 이외에 문화다양성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조항의 개정

현 행	개정시안
<p>제18조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2. 민족전통문화의 보존·계승 및 발전 <p>(신 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남북 문화예술 교류 4. 국제 문화예술 교류 5.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의 출연 7.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 위원회의 운영에 드는 경비 8.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 9. 공공미술(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전시하는 것을 말한다) 진흥을 위한 사업 10. 그 밖에 도서관의 지원·육성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시설의 사업이나 활동 	<p>제18조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 (같음) <p>2의2. 문화다양성의 증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10. (같음)

이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에 문화다양성의 증진 사업 및 활동의 지원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외국인 등이 국적·민족·인종 등에 관계없이 문화적 다양성을 표현하는 문학, 예술, 체육, 영상, 축제, 문화행사, 문화상품 등을 통한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4) 문화다양성 증진 조항의 신설

현 행	개정시안
신 설	<p>제38조의2 (문화적 다양성의 증진) ① 정부는 국가가 가입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이하 “문화다양성 협약”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문화다양성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적 활동, 상품, 서비스의 다양성 보호 2. 다양한 문화의 상호 존중 3. 문화다양성을 증진하는 국제 교류 4. 개발도상국의 문화예술정책 지원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사회의 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문화다양성을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다양성 관련 예술·축제 등의 지원 2. 문화다양성 체험 프로그램 개발 지원 3. 다문화사회 관련 문화시설 조성 및 확충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의 증진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추고 조사·연구하여 새로운 문화 창조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 자료 및 활동, 외국문학·예술·문화콘텐츠 등의 번역 및 소개 등의 다문화콘텐츠 발굴과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는 연구기관, 예술단체, 예술종사자 및 일반인을 지원할 수 있다.</p>

현 행	개정시안
	<p>④ 정부는 「문화다양성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국가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에 관한 정책 수립에 관한 절차, 사업의 실시, 지원 기준 등 구체적 절차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2) 제 2 안

제2안은 제1안에서의 제1조(목적), 제3조(시책과 권장), 그리고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의 개정시안을 제2안에서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문화적 다양성 증진과 관련된 조항을 독립된 장으로 추가하는 방식이다. 「문화예술진흥법」에 제3장의2(문화적 다양성의 증진)을 추가하는 방안이다. 제3장의2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장의2 문화적 다양성의 증진
제15조의3 (문화다양성 증진 정책의 수립)
제15조의4 (문화다양성을 표현하는 문화예술활동의 지원)
제15조의5 (다문화 콘텐츠 및 축제 개발 및 보급)
제15조의6 (다문화사회의 문화 환경 조성)
제15조의7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공간 마련)
제15조의8 (국제적 문화교류의 지원)
제15조의9 (전문인력 양성·지원)
제15조의10 (국가보고서의 작성)

1) 문화다양성 협약 이행에 따른 정책 수립

제15조의3 (문화다양성 증진 정책의 수립) ① 정부는 문화콘텐츠 또는 문화예술활동에 있어 문화적 다양성을 보호하고 국가가 가입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이하 “문화다양성협약”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문화다양성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문화적 활동, 상품, 서비스의 다양성 보호
2. 다양한 문화의 상호 존중
3. 문화다양성을 증진하는 국제 교류
4. 개발도상국의 문화예술정책 지원

② 정부는 국제기구 및 관련국 정부와 협조하여 문화다양성을 위한 정보 및 모범사례 등의 교환에 노력하여야 한다.

문화다양성 관련 정책은 문화적 다양성을 높이는 문화활동, 상품, 서비스의 보호와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하는 교육, 국제교류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문화콘텐츠나 문화예술활동에 있어 다양성을 보장하고 진흥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문화다양성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다양성 이해 교육이 필수적이다. 또한 다양한 문화를 상호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 증진하는 국제교류 등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문화다양성을 표현하는 문화예술활동의 지원

제15조의4 (문화다양성을 표현하는 문화예술활동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외국인 등이 국적·민족·인종 등에 관계없이 문화적 다양성을 표현하는 문학, 예술, 체육, 영상, 축제, 문화행사, 문화상품 등을 통한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다양한 문화를 상호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가장 직접적으로 문화다양성을 표현하는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화다양성을 표현하는 예술활동은 국적, 민족, 인종 등의 차별 없이 지원되어야 하고, 이러한 지원대상 문화예술활동은 문학, 예술, 체육, 영상, 축제, 문화행사, 문화상품 등이다.

3) 다문화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제15조의5 (다문화 콘텐츠 및 축제 개발 및 보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의 증진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추고 조사·연구하여 새로운 문화 창조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 자료 및 활동, 외국문학·예술·문화콘텐츠 등의 번역 및 소개 등의 다문화콘텐츠 발굴과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는 연구기관, 예술단체, 예술종사자 및 일반인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콘텐츠를 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문화적 다양성 증진은 실제로 문화콘텐츠로 구체화된다. 따라서 다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문화콘텐츠 발굴과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는 연구기관, 예술단체, 예술종사자 및 일반인을 지원하고, 다문화콘텐츠를 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등을 지원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을 향유하고 문화적 창의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4) 다문화사회의 문화 환경 조성

제15조의6 (다문화사회의 문화 환경 조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문화사회의 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문화다양성을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문화다양성 관련 예술·축제 등의 지원
2. 문화다양성 체험 프로그램 개발 지원
3. 다문화사회 관련 문화시설 조성 및 확충

② 특별시장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은 관할 지역에서 문화다양성을 증진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다양성을 증진하는 것은 상호문화의 이해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다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문화다양성을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각종 지역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개방된 다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력이 향상되고 다양한 문화를 포용하게 될 것이다.

5)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문화시설 마련

제15조의7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문화시설 마련)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구성원의 문화 다양성의 표현을 위한 자유를 보장하고

이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자료를 관리·보존·전시하는 문화시설의 설립 또는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시설 가운데 일부를 문화다양성을 보급하기 위한 다문화시설로 지정·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문화 보급, 문화 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문화시설은 인적 교류의 공간인 동시에 문화행위를 표출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따라서 문화다양성의 표현을 위한 자유를 보장하고 증진함으로써 다문화사회에서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문화시설을 마련하는 것을 지원하도록 한다. 문화시설 가운데 일부는 문화다양성을 보급하기 위한 다문화시설로 지정 및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한다.

6) 국제적 문화교류의 지원

제15조의8 (국제적 문화교류의 지원) ① 정부는 국제기구 및 관련국 정부와 협조하여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문화상품, 문화서비스, 문화예술 활동 등의 교류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문화다양성 협약의 당사국과 지속가능한 문화의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개발도상국 출신 예술가, 그 밖의 문화전문가 및 활동가를 우대하여 개발도상국과의 문화교류를 촉진한다.

문화다양성협약 제12조(국제협력의 증진)에서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증진에 필요한 여건 조성을 위하여 양자간, 지역적, 국제적 협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다양성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국제적 교류를 확대하며, 특히 개발도상국 국가 및 개발도상국 출신 문화·예술 활동가와의 교류를 촉진하도록 한다.

7) 전문인력 양성

제15조의9 (다문화 전문인력 양성·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하고 문화의 소통에 기여할 수 있는 언어·문화·예술·체육·관광 등의 전문인력을 양성·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문화적 다양성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언어·문화·예술·체육·관광 등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다문화를 배경으로 문화적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전문인력의 배출을 통해 문화다양성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8) 국가보고서의 작성

제15조의10 (국가보고서의 작성) ① 정부는 「문화다양성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가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국가보고서의 작성은 문화다양성협약에 따른 의무사항이다. 문화다양성 협약 제9조(정보공유와 투명성)에서는 당사국에게 i) 자국 영토 내에서 그리고 국제적 차원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들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보고서 형태로 4년마다 유네스코에 제출하도록 하며, ii) 이 협약과 관련하여 정보공유를 책임지는 연락관을 지정하도록 하며, iii)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교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정부가 국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관계 부처의 의무이행을 규정하도록 한다.

2.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의 개정

문화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다문화이해 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교육에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지원법」 개정시안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현 행	개정시안
<p>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문화예술교육”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p>	<p>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문화예술교육”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 <u>국가가 가입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 상의 문화다양성을 교육</u></p>

현 행	개정시안
같이 세분한다. 가. ~ 나. 생략	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세분한다. 가. ~ 나. 생략

3.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의 개정

가운데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다문화콘텐츠 개발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은 「문화예술진흥법」 개정내용에 포함되지만,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에도 반영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현 행	개정시안
<p>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문화산업”이란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p> <p>가. 영화·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p> <p>나. 음악·게임과 관련된 산업</p> <p>다. 출판·인쇄·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p> <p>라.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p> <p>마.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p>	<p>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문화산업”이란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p> <p>가. 영화·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p> <p>나. 음악·게임과 관련된 산업</p> <p>다. 출판·인쇄·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p> <p>라.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p> <p>마.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p>

현 행	개정시안
<p>바.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모바일문화콘텐츠·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광고·공연·미술품·공예품과 관련된 산업</p> <p>사.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 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가공·개발·제작·생산·저장·검색·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p> <p>아.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 조형물, 장식용품,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p> <p>자.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 다만,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의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과 관련된 산업은 제외한다.</p> <p>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p>	<p>바. 문화다양성을 증진시키는 산업</p> <p>사.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모바일문화콘텐츠·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광고·공연·미술품·공예품과 관련된 산업</p> <p>아.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 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가공·개발·제작·생산·저장·검색·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p> <p>자.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 조형물, 장식용품,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p> <p>차.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 다만,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의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과 관련된 산업은 제외한다.</p> <p>카.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p>

현 행	개정시안
<p>에 해당하는 각 문화산업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p> <p>4. “문화콘텐츠”란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콘텐츠를 말한다.</p> <p><신 설></p>	<p>에 해당하는 각 문화산업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p> <p>4. “문화콘텐츠”란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콘텐츠를 말한다.</p> <p>4의2. “다문화콘텐츠”란 문화적 다양성의 요소가 체화된 콘텐츠를 말한다.</p>

「문화산업진흥기본법」상 “문화산업”의 영역에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포함함으로써,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문화적 다양성의 요소가 체화된 콘텐츠”를 “다문화콘텐츠”라고 하여 문화산업의 영역에 포함시킴으로써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한다.

참고 문헌

1. 단행본 및 보고서

김이선 외,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 (I): 한국사회의 수용 현실과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_____,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문화정책 현황과 발전 방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8-17-0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

김효경,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문화정책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박종보·조용만, 『다문화가족지원법 마련을 위한 연구』, 여성가족부, 2006.

세계문화기구를 위한 연대회의 편, 『[세미나자료]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의 18대 국회 비준이 절실합니다』, 2007년 11월 국회 토론회 자료집 및 국회 토론회 이후 관련 참고 자료, 세계문화기구를 위한 연대회의, 2008.

손봉숙 의원실, 『[세미나자료] 문화다양성 협약, 각국의 문화정책을 국제법으로 보장할 수 있는가』, 손봉숙 의원실, 2005.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엮음, 『유네스코와 문화다양성』,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2008.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유네스코 세계보고서: 문화다양성과 문화간 대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2010.

참고 문헌

- 이동연 외, 『문화다양성협약과 한국영화』, 커뮤니케이션북스, 2009.
- 이태주 외, 『다민족·다문화사회의 진전에 있어서의 사회 갈등 양상과 극복과정: 호주와 일본의 사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 정갑영, 『문화다양성협약 실행을 위한 문화정책과제 및 교류협력사업 개발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9.
- 정병국 의원실 외, 『[세미나자료]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이 문화 예술에 미치는 영향』, 세계문화기구를위한연대회의, 2007.
- 정상우 외, 『다문화사회 문화적 지원을 위한 법률제정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한국법제연구원, 2008.
- 최병두, 『다문화공생: 일본의 다문화사회로의 전환과 지역사회의 역할』, 푸른길, 2011.
- 최종일, 『문화다양성협약 실행을 위한 정책 연구: 문화산업 정책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 홍기원, 『다문화정책의 방향과 문화적 지원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6.
- 황정미 외, 『한국사회의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 Will Kymlicka, Politics in the vernacular: nationalism, multiculturalism and citizenship,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2. 논문

- 김남국, “문화적 권리와 보편적 인권: 세계 인권 선언에서 문화다양성 협약까지”, 『국제정치논총』 제50집 1호, 한국국제정치학회, 2010. 3.

- 김남국, “심의다문화주의: 문화적 권리와 문화적 생존”, 『한국정치학회보』 제39집 1호, 한국정치학회, 2005.
- 김선택, “다문화사회의 헌법적 문제”, 『헌법학연구』 제16권 제2호, 2010.
- 김연권, “다문화 사회와 다문화주의”, 『다문화사회의 이해와 전망』, 국가인권위원회, 2009.
- 박병도·김병준, “문화다양성과 국제법: 문화다양성협약을 중심으로”, 『일감법학』 제16호, 이호문화사, 2009.
- 서헌제, “문화다양성협약에 대한 법리적 연구: 문화상품의 국제교역과 문화권을 중심으로”, 『중앙법학』 제10집 제2호, 중앙법학회, 2008.
- 장선희, “한국의 다문화가족 관련법제의 현황과 평가”, 『한국민족연구논집』 42권, 한국민족연구원, 2010.
- 조상균·이승우·전진희, “다문화가정 지원 법제의 현황과 과제”, 『민주주의와 인권』 제8권 제1호,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 2006.
- 최윤정·최혜자·심보선·양철모·조지은·양혜란·미누목탄, “제6차 경기문화포럼 ‘다문화사회의 문화예술’”, 『경기문화』 제2호, 2010.